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 보건(기능)식품 통용기준

(국가기술감독국 1997.02.28 승인 1997.05.01시행)  
(General standard for health(functional) foods)

## 서 언(前言)

중국은 보건(기능) 식품 역사와 전통이 오래 되었다. 중국 전통보건음식과 자양강장식품은 이미 몇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보건(기능)식품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여 대량의 제품이 시장에 통용되고 있다. 본 표준 제정은 보건(기능) 식품 정돈·규범화, 관리강화, 생산기업의 합법적 권익,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본 표준에서 규정한 위생구비조건(6.5)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공포한 《보건식품 통용 위생요구》에 근거하여 제정하였다.

본 표준이 상표에 대한 구비조건은 GB7718-94《식품상표 통용기준》과 GB 13432-92《특수 영양식품상표》에 근거하였고 또한 국무원 위생 행정부서가 공포한 《보건식품 표지(標識) 및 제품 설명서의 표시 내용 및 그 표시 요구》를 참고하여 보건(기능)식품의 특성에 대해 부분적인 상표 표기 내용을 증가하였다.

본 표준 시행일로부터 보건(기능) 식품 생산기업은 지방기술감독국에 서류를 구비 기업 표준을 신청함으로써 본 표준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표준은 전국식품공업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제출하였다.

본 표준은 전국 식품공업표준화기술위원회에 속한다.

본 표준은 국가양봉제품질량감독검사센터·중국농업대학·중국식품발효공업연구소·중국보건식품협회기술위원회와 전국식품공업표준화기술위원회 비서처가 공동으로 구성된 입안 업무팀이 책임 입안하였다.

본 표준 주요 입안자는 하오위(郝煜)·리즈지엔(李子健)·차이통이(蔡同一)·천상큐이(陳祥奎)·차오팅쿤(喬廷昆)·란리난(蘭立男)·양샤오밍(楊曉明)이 참가 입안하였다.

## 1. 범위

본 표준은 보건(기능) 식품의 정의·제품분류·기본원칙·기술구비조건·시험방법과 상

표 구비조건을 규정하였다.

본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생산과 판매하는 보건(기능) 식품에 적용한다.

## 2. 인용 표준

아래 표준에 포함된 조문을 본 표준에 인용 구성하여 본 표준의 조문을 구성하였다. 본 표준 출판 시 판본에 명시된 모든 것이 유효하다. 모든 표준은 수정할 수 있다.

본 표준을 사용하는 측은 아래 판본이 최신판인가를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GB 2760-1996식품첨가제 사용 위생표준

GB 4789.2-94식품위생 미생물학 검사실험균락(菌落)총수 측정

GB 4789.3-94식품위생 미생물학 검사실험대장균군 측정

GB 4789.4-94식품위생 미생물학 검사실험살모넬라(salmonella)균 검사실험

GB 4789.5-94식품위생 미생물학 검사실험즈히씨균 검사실험

GB 4789.10-94식품위생 미생물학 검사실험 황금색포도상 구균 검사실험

GB 4789.11-94식품위생 미생물학 검사실험 용혈성 연쇄상 구균 검사실험

GB 4789.15-94 식품위생 미생물학 검사실험 곰팡이와 효모 계수

GB/T 5009.11-1996 식품 중 전체 비소(As) 측정방법

GB/T 5009.12-1996 식품 중 납(Pb)의 측정방법

GB/T 5009.17-1996 식품 중 전체 수은(Hg) 측정방법

GB 7718-94 식품 상표 통용기준

GB 13432-92 특수영양식품 상표

GB 14880-94 식품영양강화제 사용위생 표준

GB 14881-94 식품기업 통용 위생 규범

GB 14882-94 식품 중 방사물질 제한 농도 표준

GB 15266-94 운동 음료

## 3. 정의

본 표준은 아래 정의를 적용한다.

### 3.1 보건(기능) 식품health (functional) food

보건(기능)식품은 식품의 일종으로 일반 식품의 공통성을 구비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으며 특정인들의 식용에 적합하지만 질병치료 목적은 아니다.

### 3.2 기능 성분functional composition

자극 활성 효소의 활성 혹은 기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체조절의 물질이다. 최근 주요하게 포함되는 것으로

- 다당류, 예를 들면 음식섭유, 표고버섯 다당 등
  - 기능성 감미료(제)류, 예를 들어 단당, 저 폴리당, 다원당 알콜 등
  - 기능성 유지(지방산)류, 예를 들어 다(多)불포화지방산, 인지질, 콜린(choline) 등
  - 자유기(自由基) 제거제류, 예를 들어 초(超) 산화물기효소(SOD), 곡물암모니아(甘) 펩타이드과산화 효소
  - 비타민류, 예를 들어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C 등
  - 펩타이드 및 단백질류, 예를 들어 곡물암모니아 감(甘)펩타이드, 면역구 단백질 등
  - 활성균류, 예를 들어 유산균, 쌍기간균 등
  - 미량원소류, 예를 들어 셀렌(Se), 아연(Zn) 등
- 기타 28알칸(alkane) 효소, 식물스테롤(sterol), 사포닌(saponin) 등

#### 4. 제품 분류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에 따라 분류하면 면역기능조절 식품, 노화방지 식품, 기억력 개선 식품, 성장촉진식품, 피로회복 식품, 다이어트 식품, 산소부족 극복 식품, 방사선 저항 식품, 돌변변이 저항식품, 종양억제 식품, 혈지방 조절 식품, 기능 개선 식품, 혈당조절 식품 등이다.

#### 5. 기본 원칙

- 5.1 보건(기능) 식품은 인체에 대해 어떠한 급성·준 급성 혹은 만성 위해(危害)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5.2 보건(기능)식품은 과학실험(효과 성분 측정, 정량분석 즉 동물 혹은 사람의 기능 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기능 성분과 확실하고 안정적인 인체기능 조절작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동물(사람) 실험을 통해 확실하고 안정적인 인체기능 조절작용이 확실하여야 한다.
- 5.3 보건(기능)식품의 조제·생산공정은 과학에 근거하여야 한다.
- 5.4 보건(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GB 14881-9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점진적으로 품질보장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 6. 기술 구비조건

##### 6.1 원료와 보조재료

- 6.1.1 원료와 보조재료 : 국가 표준 혹은 업종 표준의 규정이나 혹은 관련 규정에 각각 적합하여야 한다.

6.1.2 식품 첨가제 : 해당 식품첨가제는 국가 표준 혹은 업종 표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1.3 농약·동물약품 및 생물 독소 잔류 한계량 : 관련 국가표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1.4 방사성 물질 제한량 : GB 14882-9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2 외관 및 감각기관 특성**

보건(기능)식품은 유사 식품이 갖고 있는 기본 형태·색깔·냄새·맛·품질을 보유해야만 한다.

**6.3 기능 구비조건**

보건(기능)식품은 최소한 인체조절 기능 중 한가지 기능이라도 보유하여야 한다.

**6.4 이화(理化) 구비조건**

**6.4.1 순함량**

정량인 단독(1개의) 포장식품의 순함량 및 그 상표 표기의 품질은 체적 차이가 표 1 규정의 마이너스 편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1. 정량 단독(1개의) 포장식품의 순함량

순함량(Q)	마이너스 편차	
	Q의 백분비	g 혹은 ml
5g~50g, 5ml~50ml	9	-
50g~100g, 50ml~100ml	-	45
100g~200g, 100ml~200ml	45	-
200g~300g, 200ml~300ml	-	-
300g~500g, 300ml~500ml	3	-
500g~1kg, 500ml~1kg	-	15
1kg~10kg, 1l~10l	15	-

**6.4.2 효과 성분**

보건(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기능에 상응하는 효과 성분 및 효과 성분의 최저 함량을 보유해야 한다. 필요 시 효과 성분의 최고 제한량을 규제할 수 있다.

6.4.3 영양소

보건(기능)식품은 6.4.2의 규정 외에 같은 류(類)의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보 유해야 한다.

6.4.4 식품 첨가제와 식품 영양 강화제의 첨가량

식품 첨가제와 식품 영양 강화제의 첨가량은 GB 2760과 GB 14880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한다.

영유아·임산부 식용에 제공하는 보건 식품은 흥분제와 호르몬(hormone)이 함유되어 서는 안 된다. 운동선수 식용에 제공되는 식품은 GB 15266 규정의 금지약품을 함유해 서는 안 된다.

6.5 위생 구비조건

6.5.1 유해금속 및 유해물질 한계량

같은 류(類)에 속하는 제품 국가위생표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응하는 같은 류 (類)의 제품과 관련이 없는 납·비소·수은의 제한량은 표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납·비소·수은의 제한량

항 목	제 한 량	
	일반제품	개별제품
납,mg/kg ≤	0.5	일반 캡슐제품 1.5, 조류(藻類)와 차를 원료한 고체음료와 캡슐제품 2.0
규소,mg/kg ≤	0.3	조류(藻類)와 차를 원료한 고체음료와 모든캡슐제품 1.0
수은,mg/kg ≤	-	조류(藻類)와 차를 원료한 고체음료와 모든캡슐제품 0.3

6.5.2 미생물 제한량

같은 류(類)에 속하는 국가위생 표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응하는 같은 류 (類)의 제품과 관련이 없는 미생물 제한량은 그 제품 형태에 따라표3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3. 미생물 제한량

항 목	제 한 량			
	액체상태 제품		고체 혹은 반고체 제품	
	단백질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것	단백질이 1.0%보다 작은 것	단백질이 4.0%보다 크거나 같은 것	단백질이 4.0%보다 작은 것
세균총수, cfu/g 혹은 ml ≤	1000	100	30000	1000
대장균군, MPN/100g 혹은 100 ml ≤	40	6	90	40
곰팡이균, cfu/g 혹은 ml ≤	10	10	25	25
효모, cfu/g 혹은 ml ≤	10	10	25	25
병원(장 관련 병 발생균과 병 발생 구균)	검출되어서는 안됨			

## 7. 시험 방법

### 7.1 영양소와 효과 성분

해당되는 국가·업종 표준 규정의 방법에 따라 혹은 권위 기구가 인가한 방법에 따라 측정

### 7.2 홍분제와 호르몬

해당되는 국가·업종표준 규정의 방법에 따라 혹은 권위 기구가 인가한 방법에 따라 측정

### 7.3 납

GB/T 5009. 12가 규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

### 7.4 규소

GB/T 5009. 11이 규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

### 7.5 수은

GB/T 5009. 17이 규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

### 7.6 세균 총수

GB 4789. 2가 규정의 방법에 따라 검사

### 7.7 대장균군

GB 4789. 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

### 7.8 곰팡이균과 효모

GB 4789. 3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

### 7.9 병원균

GB 4789.4, GB 4789.5, GB 4789.10과 GB 4789.11 규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

## 8. 상표

국내 생산과 수입 보건(기능) 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 포장의 상표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 8.1 보건(기능) 식품 명칭

8.1.1 GB7718-94 중 5.1과 8.4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는 보건(기능)식품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새로 만든 이름” “특이한 명칭” “숫자명칭” 혹은 “상표 명칭” 시 반드시 식품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는 보건(기능)식품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혹은 승인 인가를 거쳐 기능 작용의 명칭을 표기한다. 예를 들면 노쇄방지식품 · 다이어트 식품 · 피로회복 식품 등이다.

8.1.2 약품 명칭 혹은 유사 약품의 명칭을 제품에 명명(命名)해서는 안되고 외국어 약호 명칭 · 고유번호 명칭 혹은 중국어 발음 명칭을 표기해서는 안된다.

### 8.2 배합원료표 (배합원료)

GB 7718-94 중 5.2의 규정에 의거 보건(기능) 식품의 배합원료를 표기한다. 식품 첨가제와 식품 영양 강화제는 GB 2760과 GB 14880의 규정에 의해 구체적인 명칭을 표기한다.

### 8.3 효능 성분과 영양성분표

8.3.1 도표에 각 100g 혹은 100ml 보건(기능) 식품 중 주요 작용과 보조 작용의 효능 성분 함량(계량단위는 g, mg, μg 혹은 국제단위 표시)을 표기한다.

8.3.2 활성 생물체(예를 들어 활성유산균 등)를 함유한 보건(기능) 식품은 각 100g 혹은 100ml 각종 활성생물체의 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8.3.3 현대 과학기술로 효능 성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제품은 주요작용과 보조작용의 원료 명칭 및 투입량을 표기한다.

8.3.4 GB 13432-92 부록 A의 규정에 의거 도표에 영양성분(영양소)의 함량을 표기한다.

#### 8.4 보건기능

표기한 보건기능은 승인 인정한 기능과 서로 일치하여야 하고 제품의 "병 치료" 작용을 묘사·소개 혹은 암시해서는 안 된다.

#### 8.5 순합량 및 고체 형태물 함량

GB 7718-94 중 5.3 규정에 의거 순합량 및 고체형태물 함량을 표기한다.

#### 8.6 제조자의 명칭과 주소

8.6.1 보건(기능)식품 제조·포장·개별 포장 업체는 법에 의거 영업 허가증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하여야 한다.

8.6.2 수입보건(기능)식품은 8.6.1의 내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원산지 혹은 지역(홍콩, 마카오대만을 지칭)명칭을 총대리점과 중간 도매상은 국내법에 의거 영업 허가증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한다.

#### 8.7 생산일자, 품질보존기간과 보존기간

8.7.1 년, 월, 일 순서에 따라 보건(기능)식품의 생산일자를 표기한다.

8.7.2 GB 7718-94 중 5.5.1.2의 규정에 의거 보건(기능)식품의 품질보존기간과 보존기간을 표기한다.

#### 8.8 저장방법(조건)

만약 보건(기능)식품의 품질 보존기간 혹은 보존기간과 저장방법(조건)과 관련하여 저장 구비조건을 표기하여야 한다.

#### 8.9 식용방법

8.9.1 제품의 식용대상, 즉 효능에 알맞는 특정인을 표기한다.

8.9.2 GB 7718-94 중 7.2의 규정에 의거 식용방법을 표기한다. 매일 혹은 1회 적정 식용량, 제품에 적당한 특정인을 구분 표기한다.

#### 8.10 상품 표준번호와 허가번호

제품의 국가표준·업종표준 혹은 고유번호와 일련번호 및 허가번호를 표기한다. 수입 보건(기능)식품은 제품 표준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 8.11 특수표기내용

홍분제 혹은 호르몬이 함유된 제품은 홍분제·호르몬의 정확한 명칭과 함량을 표기한다.